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)

가.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38 명으로 한다.

나.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한 기관홍보
- (2) 상담 - 전화 상담, 인터넷 상담 후 방문
- (3)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
- (4)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
- (5)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.
- (6)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전단지 광고,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, 모집한다.

제2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%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.)

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,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,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 원	2,331,200 원	1,528,200 원	1,409,700 원	1,208,900 원	676,320 원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 미만	33,460 원	30,980 원	28,590 원	27,300 원	25,990 원	25,99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 원	38,720 원	35,740 원	34,120 원	32,490 원	32,49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 원	51,930 원	47,940 원	46,300 원	44,650 원	44,65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 원	64,590 원	59,640 원	58,010 원	56,360 원	56,36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76,820 원	71,160 원	65,750 원	64,090 원	62,460 원	56,360 원
13시간 초과	82,370 원	76,310 원	70,500 원	68,860 원	67,240 원	56,360 원

○ 비급여 수가

비급여 청구 항목	금액	비고
① 하루 식사, 간식	6,000 원	* 식사 2식, 아침 죽 간식, 간식2회 포함하여 계산
② 1식 식사	2,000 원	* 식사 2식
③ 간식	500 원	* 간식 2회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마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
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가)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
나)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다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라)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내용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마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바)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제3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1)주·야간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(1) 신체활동 지원

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
(2) 개인 활동 지원

-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

(3) 정서지원

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
(4) 치매관리 지원

- 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
(5) 송영서비스

나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